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87 발의연월일: 2021. 7. 7.

발 의 자:윤준병·최종윤·전재수

송재호・강득구・김병기

위성곤 · 김수흥 · 양정숙

이수진(비) · 임종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한편,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

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제7조제2항·제9조제1항제 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 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설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수하여

- 줄 것을 청구하거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또는 분양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매수 청구나 분양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매수 청구 또는 분양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수하고이를 설치·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또는 분양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시켜야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 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 대한 준공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 발 • 설치 • 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 -----폐기물처리 리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거 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 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 -.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또는 설> 공장의 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 · 운영할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 <신 설> 단지 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

페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 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설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5 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설 부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 구하거나 산업단지폐기물처리 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 당 부지를 분양하여 줄 것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또는 분양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매수 청구나 분양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원영하거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수 청구 또 는 분양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 <u>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u>장・ 군수 ·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해 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수 하고 이를 설치・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 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 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 1호의2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또는 분양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 · 방법 등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신 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 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 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 정계획을 결정 ·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계획에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 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 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 업단지 실시계획
- 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정) ①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 2. (현행과 같음)